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24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19.

발 의 자 : 김정재 · 고동진 · 박덕흠
정점식 · 서일준 · 이헌승
이달희 · 최수진 · 김승수
김대식 · 이인선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수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.

그러나 ‘상시’라는 기준이 모호하며, 특히 여름철 많은 인파가 물리는 청계천의 경우 실시간 수질의 오염도를 확인할 수 없고 사람들이 신체의 일부를 오염된 하천에 담가 감염병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.

이에 공공수역에 정화시설의 설치, 수질의 실시간 측정 및 수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수역을 만들고자 함(안 제5조제1항 및 제9조 등).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상시측정(常時測定)”을 “실시간 측정”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중 “상시측정”을 “실시간 측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측정망(測定網)”을 “정화시설 및 측정망(測定網)”으로, “상시측정하여야”를 “실시간으로 측정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측정망”을 “정화시설 및 측정망”으로, “상시측정하거나”를 “실시간으로 측정하거나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상시측정”을 “실시간 측정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측정, 조사 및 보고”를 “제1항,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시간 측정, 조사, 보고 및 공개”로 한다.

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질오염도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1항 전단 중 “상시측정”을 “실시간 측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·운영 등)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수질의 <u>상시측정</u> (常時測定) 결과,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, 제23조에 따른 오염원 조사 결과,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,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	제5조(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·운영 등) ① ----- ----- <u>실시간 측정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9조(수질의 <u>상시측정</u> 등)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·호소,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(이하 “하천·호소등”이라 한다)의 전국적인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<u>측정망</u> (測定網)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(水質汚染度)를 <u>상시측정</u> 하여야 하며,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	제9조(수질의 <u>실시간 측정</u>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정화시설 및 측정망</u> (測定網)----- -- <u>실시간으로 측정</u> 하여야----- -----

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,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(이하 “대도시”라 한다)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관할구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, 수질의 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상시측정 또는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측정, 조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)

①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, 대도시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제9조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

-----.

③ -----

-----정화시설 및
측정망-----실시간으
로 측정하거나-----
-----.

-----실시간 측정-----

-----.

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질오염도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,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시간 측정, 조사,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)

① -----

-----실시간

등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수생
태계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
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
조사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
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, 특
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
나무, 흙, 돌 또는 그 밖의 장
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
할 수 있다. 이 경우 토지의 소
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
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
할 수 없다.